

< 평가관리번호 : 0-1-2021-03-0001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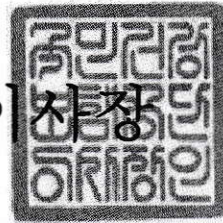
장기요양기관 평가 통보서 (정기)

1. 기관명 : 밀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1-46130-00008)
2. 급여종류 : 입소시설10인미만
3. 평가일 : 2021년 12월 20일
다만, 사정에 따라 평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4. 자료제출 및 평가범위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
 -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
5. 평가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형렬 외 2명
다만, 사정에 따라 평가자 및 평가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투입할 수 있음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20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



▶ 문의 :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(전화 : 062-250-0320)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제1항제3호의7에 따라 평가를 거부, 방해 또는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며,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

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안내문

1 개요

- 장기요양기관 평가 목적
 -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및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확대 위함
- 법적 근거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

2 수행절차

- 평가기간 : 2021.04.19. ~ 2022.07.31.
- 평가순서 결정 방법 : 무작위(랜덤추첨) 선정
 - ※ 평가자문위원(협회 관계자 1명 포함) 입회
- 평가대상 : 2019.12.31.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
- 평가내용 : 기관운영, 환경 및 안전, 수급자 권리보장, 급여제공과정, 급여제공결과 등에 관한 관련서류 및 면담, 관찰, 현장 확인, 자체점검 등의 방법으로 시행
- 평가절차
 - 평가예정통보(평가예정일 7일전) → 평가 실시(3인1팀(공단2인, 외부1인)), 평가자 탄력 조정가능
 - 등급결정 및 조정 → 평가결과 공표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)
 - 우수기관 가산금 지급 ... 행정처분 등에 따라 등급결정 및 가산지급 제외
 - ※ 공단평가자는 기관평가, 외부평가자는 면담·관찰·시연 평가 등 실시
- 평가의견수렴 : 평가 종료 후 참여가능
 - ※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→ 로그인(공인인증서) → 기관평가 → 평가의견수렴방 등록

3 권리구제 등 절차안내

- 이견신청 : 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이견 조정 등
 - ※ 평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역본부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문서 제출
- 심사청구 :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 - ※ 단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
 - ※ [26464]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)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
-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, 이와 별도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「행정소송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

▶ 문 의 :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

(전화번호: 062-250-0320

담당자: 박형렬)